

제316회 정례회

2012. 12. 13(목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헌경 의원 외 6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2년 12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12월 6일

3. 제안이유

가. 최근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도시개발사업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
○ 상위법규인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대한 적용범위 내용 삽입

나.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시 과소토지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
○ 법령 변경 : 「도시계획법시행령」 ⇒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○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, 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○ 현행 조례 '제8조(과소토지의 기준)'의 근거 조항인 「도시계획법

시행령」 폐지에 따라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으로 법령 근거 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,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.

6. 검토의견

가.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간결하게 제출되었으므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